

위원회"로 한다.  
 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.  
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 제70조의2(시정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.  
 ②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,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  
 ③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 
 ④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의 개의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
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

다만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  
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 ①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.  
 제84조제5항중 "제1항, 제2항, 제4항의"를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의"로 한다.

부 칙  
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'99시유재산관리계획안

청소년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, 시립서대문병원 점유부지를 매입하며,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파출소 신설 및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99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관리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
○취득 4건: 토지6필지12,211.3㎡(3,693.9평)

'99 시유재산관리계획요약

구 분			필지수	면적(㎡)	금액(천원)	세 부 사 항
계	4건	토지	6	12,211.3	7,231,524	
취득	매입	토지	6	12,211.3	7,231,524	○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○시립서대문병원 점유부지 매입 ○봉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○이문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

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개별공시 지 가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1	임야	금천구 시흥동 산 84-7	9,265.0	576,283	'99. 1/4분기	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	금천구 시흥동 산91 성부전외11	
2	구거	은평구 구산동 산 58-1외 2	1,052.1	852,241	'99 상반기	시립서대문병 원 점유부지	국가(건설교통부)	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개별공시 지 가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 · 성명	비고
	구분	소 재 지					
3	대	관악구 봉천동 494-8	904.2	4,110,000	'99 상반기	봉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	관악구 봉천동 494-8 신경철외1
4	대	동대문구 이문동 292-249	990.0	1,693,000	"	이문소방파출소 신축부지	동대문구 이문동 292 임은성
계	4건	6필지	12,211.3	7,231,524			

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1. 목 적

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'99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,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·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기능,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감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.

※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
-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

2. 감사기간

○ '98. 11. 21(토) ~ 11. 30(월) 10일간

3. 감사대상기관

위원회명	위원회 선정기관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)	본회의의결 대상기관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3호·제5호·제6호)
운 영	· 의회사무처	없 음
행정자치	· 공 보 관 · 감 사 관 · 비상기획관 · 행정관리국 · 소방방재본부 · 공무원교육원	없 음
기획경제	· 기획예산실 · 시정개혁단 · 산업경제국 · 시립대학교 · 전산정보관리소 · 농촌지도소 · 공업시험소 · 시립기능대학 ·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·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	·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· 서울산업진흥재단 ·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· 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·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· 시립앨범직업전문학교 · 시립노동복지회관